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49 호

2000 년 10 월 27 일 금 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34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5호(2000년도계량기정기검사실시공고) -----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8호(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및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
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0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1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2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3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4호(압류재산공매(예고)통지서공시송달공고) --- 22

중양·시행정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86호(인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승인고시) --- 2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87호(인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승인고시) --- 2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34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수산정수장도수관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2000. 8. 24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한 재결서 정본이 소유자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재결서 정본을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0. 10. 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수산정수장도수관로건설공사)
2. 기업자(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3. 재결일자 : '2000. 8. 24.
4. 공고기간 : '2000. 10. 6 ~ 10. 20 (15일간)
5. 재결서 정본 교부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도시행정팀 (전화 032-453-2662)
6. 공시송달 대상(반송명세서) : “별첨(보상금 내역)”
7. 기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 상 금 내 역(토지)

[수산정수장도수관로건설공사]

수 용 토 지 의 표 시				보 상 액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성 명	주 소 (등기부등본주소/ 주민등록등본주소)	성 명	주 소 (등기부등본주소/ 주민등록등본주소)	
남동구 운연동	산 19-1	임	268.00 ×1/10	29,400	김 영 국	인천 북구 작전동 163			
계	1필지		27	787,920					
남동구 운연동	산 19-1	임	268.00 ×1/10	29,400	(망)김희수	인천 계양 효성동 현대A			
계	1필지		27	787,920		202-1103 김용길(자)			
남동구 운연동	산 19-1	임	268.00 ×1/10	29,400	김 영 순	인천 북구 작전동 129			
계	1필지		27	787,920					
남동구 운연동	산 19-1	임	268.00 ×1/10	29,400	(망)김영구	인천 계양 작전2동			
계	1필지		27	787,920		856-106 김상수(조카)			
남동구 운연동	산 19-1	임	268.00 ×1/10	29,400	김 영 무	인천 북구 작전동 164			
계	1필지		27	787,920					
남동구 운연동	산 19-1	임	268.00 ×1/10	29,400	(망)김영호	인천 계양 작전동 안흥빌			
계	1필지		27	787,920		라 사동 2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5호

2000년도계량기(전량논새김탱크)정기검사실시공고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계량기(전량논새김탱크)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0. 10.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대상자(계량기) : 다음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빙에 사용하는 자
- 전량논새김탱크
2. 검사기간 : 2000. 11. 23 ~ 12. 7 (검사시간 : 매일 10: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3. 검사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자	대 상 지 역	대 상 업 소	검 사 장 소
2000. 11. 23 (목)	간석 1,2동	일반석유판매업소	김소 소재지
2000. 11. 24 (금)	간석 3동	"	"
2000. 11. 27 (월)	간석 4동	"	"
2000. 11. 28 (화)	구월 2, 4동	"	"
2000. 11. 29 (수)	구월 1, 3동	"	"
2000. 11. 30 (목)	만수 1, 2동	"	"
2000. 12. 1 (금)	만수 3, 4, 5, 6동	"	"
2000. 12. 4 (월)	논현고잔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	"
2000. 12. 5 (화)	전지역	· 일반석유판매업소(비수리자) · 기타업종	남동구청 체육광장
2000. 12. 6 (수)	전지역	"	"
2000. 12. 7 (목)	전지역	"	"

4. 소재장소검사 및 검사의 연기신청

- 가. 소재장소검사 :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장소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소재장소검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검사의 연기신청 : 검사기간내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 가. 우천시에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 나. 제작검정 또는 수리검정 유효기간이 2000년도에 속한 계량기도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으실 경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 한 이후에는 부정계량기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계량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남동구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및
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보조금교부시의 조건외 5건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중복규제이며, 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제5조4항은 1,2,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삭제하여 보조금관리 및 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2항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남동구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를 삭제 하려는 것임.

- 나.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사정변경에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1항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남동구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를 삭제 하려는 것임
- 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는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남동구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를 삭제 하려는 것임.
- 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는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남동구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임
- 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1항은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남동구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로 재규정 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임
- 바.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는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남동구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상 명백한 규제행위이므로 남동구 관련 조례 를 삭제하려는 것임.
- 사.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5조4항은 1,2,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0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종서식으로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2060, 2063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기획감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시 : 2000.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이유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보조금교부시의 조건외 5건은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삭제 하여 보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제7조2항, 제11조, 제10조1항, 제12조1항, 제13조1항, 제15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5조4항을 삭제코자 함.

□ 본 문

“ 별첨 참조 ”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조 ”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3항을 각각 제1항 내지 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17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생략)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삭제)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삭제)			
②(생략)	①(현행 제2항과 같음)			
③(생략)	②(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삭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삭 제)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현행 제13조와 같음) ① (삭 제)		
② (생 략)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생 략)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생 략)	제12조(사업비 정산검사)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삭 제)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생 략)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생 략)	제13조(보조사업의 신고)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 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 략)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 제17조와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시 : 2000.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이유

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제5조 4항은 1,2,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삭제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제5조4항을 삭제코자 함.

□ 본 문

“ 별첨 참조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조 ”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제5조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①~③ (생 략) ④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u>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u>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0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0년 10 월 25 일 ~ 2000년 11 월 3 일 까지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0년 11 월 3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서울3퍼8450 외 21대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견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593	서울3퍼8450	쏘나타	정준식	서울 양천구 목동 726-13	도림동 558-8 도림초교 앞 공터	서울폐차 사업소
596	서울4보5739	엘란트라	윤도영	서울 성동구 옥수동 495-18	간석3동 94-10 신한빌라 앞	기전폐차 사업소
597	인천30우7497	쏘나타 오토매틱	박성수	인천 부평 산곡 185-17 한양(아) 101/1203	간석3동 179-3 태화오피스텔주차장	
598	인천31다8124	쏘나타 오토매틱	구자호	인천 남동 만수 854-42	간석3동 179-3 태화오피스텔주차장	
599	인천5거4359	베스타	유치규	인천 남구 학익 269-21	간석1동 557-4 카폴25시카센타 뒤	
600	경기42고7316	룩스타	김철영	경기 안산 선부동 273-2 향수농장	간석3동 45-8 동원(아) 앞	
601	인천4라1159	그랜저2.4	오응길	인천 남동 구월 1228-13	구월3동 1092-55 건설회관 주차장	
602	인천7나4585	현대마이티 덤프트럭	민경주	인천 남동 만수 905 효성상아맨션 6/407	만수3동 109-10 탐천약수터 진입로	
603	인천80가1176	포터초장축	양재현	인천 남동 만수 111-108	만수3동 109-10 탐천약수터 진입로	
604	인천80마6700	포터슈퍼캡	박병선	인천 남동 만수 111-172 하나맨션 202호	만수3동 109-10 탐천약수터 진입로	
606	인천30머5787	엑셀 오토매틱	조한일	인천 동구 만석동 46	간석2동 160-7	
607	인천1다2141	프라이드	홍석일	인천 남동 구월동 23 주공(아) 108/107	만수5동 917-2 삼보빌라 뒤	기전폐차 사업소
609	남동라1100	이륜차			만수5동 917-2 삼보빌라 뒤	서울폐차 사업소
610	경기4브2231	로얄프린스 2.0MT	김광철	경기 수원 장안구 정자동 401 동신(아) 106/507	만수5동 876 영종(아) 뒤	
611	경기40거2674	쏘나타	이계영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82	논현동 423-3 인천폐차사업소 앞	
613	번호미상	팬타			논현동 423-3 인천폐차사업소 뒤 담장가	인천폐차 사업소
614	인천30모2966	엘란트라	연철수	인천 남동 고잔동 698-5	남동공단 127블럭 1롯데	서울폐차 사업소
615	인천4나8370	엘란트라	(주)선경엔 지니어링	인천 남동 고잔 665-16 (99-17LT)	고잔동 673-10 동화오토리아 주차장내	
616	인천30러8103	르망	우영명	인천 서구 석남동 454-12	구월2동 1254-6 1번마을버스 종점	
617	인천31가1595	콩코드	이중혁	인천 남동 구월 24 주공(아) 208/404	구월2동 24 주공(아) 206동 앞	
618	남동나4283	SUPER LEAD	나선자	인천 남동 만수 923-1 신한(아) 101호	구월4동 1285-2 대중빌딩 주차장	
619	인천2가3451	캐피탈	도현섭	인천 남동 만수 871-16 동화연합 가/208	구월1동 1458 에이스주차장 내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1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2000. 9. 21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한 재결서 정본이 소유자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재결서 정본을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0.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2. 기업자(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3. 재결일자 : '2000. 9. 21.
4. 공고기간 : '2000. 10. 24 ~ 11. 7 (15일간)
5. 재결서 정본 교부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도시행정팀 (전화 032-453-2662)
6. 공시송달 대상(반송명세서) : “별첨(보상금 내역)”
7. 기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 상 금 내 역(지장물)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번호	수용물건의 표시			보 상 액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수용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단가 / 금액	성 명 /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 주 소	권리의종류	
1	간석동	산 71	선반	1대	일괄 3,250,000	황화목 인천 부평 부평1동 64-20			
			미링1호기	1대					
			불반	1대					
			불반	1대					
			컴프레사	1대					
			전기용접기	1대					
			컷팅기	1대					
			작업다이	2대					
			철자재	4톤					
			영업손실	1식	15,150,000				
2	간석동	503-12	계	10건	18,400,000				
			가옥	36㎡	식	조제레 인천 남동 간석동 71			
					15,850,000				
			계	1건	15,850,0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2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소매인구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상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10.24	2000-156	여정임	고잔동 725-10 (남동공단152블럭10롯데)	세화기공 구내매점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3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소매인구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상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10.25	2000-159	석영환	고잔동 670-5 (남동공단91블럭6롯데)	삼정구내식당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64호

압류재산의공매(예고)통지서공시송달공고

성 명 : 주성한 외 6건

주소 또는 거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70-125 동아④ 35-701

명 칭 : 압류재산의 공매(예고)통지서

내 용

위의 압류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2000년10월16일 이전에 귀하
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전출·국외이주·주소불명등으로
지방세법 제51조2항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문의처 : 남동구청 세무과 징수관리팀 (☎453-2294~2295)

2000.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압류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연명부

연번	관리번호	납 세 의 무 자		통지서의 종 류	사 유
		주 소	성 명		
1	920921 - 168	부평구 부평1동 70-125 (26/2) 동아@ 35-701	주 성 한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무단전출 말 소 자
4	980729 - 015	부평구 산곡동 87	정 순 정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주소불명
3	980915 - 264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545 (6/1)	조 찬 남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수취인 미거주
2	980915 - 286	서구 가좌동 199-3	신 명 순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수취인 미거주
5	000320 -113	남구 용현동 541-59	장 구 철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수취인 미거주
6	000929 - 100	남동구 구월동 1159 신정빌딩 3층	(주)신정메디칼	차량공매 통지서	수취인 미거주
7	000929 - 100	남구 주안동 1568-24 (42/2)	(주)신정메디칼 대표 : 민용기	차량공매 통지서	수취인 미거주

중앙시행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8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5호선외6개노선)변경결정및지형도승인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2류 25호선외 6개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75)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0. 10. 18.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결정 및 지형도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중로	2	25	15~20	국도 지로	2,550	중2-23	중2-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5	15~20	집도 산로	2,620	구월동 대3-11호	민수동 중2-21호	일반도로	노선연장
당초	중로	2	273	15	국도 지로	1,070	대1-13	중2-20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0	15	국도 지로	1,070	대1-13	중2-362	일반도로	번호변경 도면생략
당초	중로	2	351	15	국도 지로	564	중1-30	십정동 182-25 (상능지구)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1	15	국도 지로	564	중1-30	십정동 182-25 (상능지구)	일반도로	번호변경 도면생략
당초	중로	2	352	15~26	국도 지로	330	중1-30	소2-14 (상능지구)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2	15~26	국도 지로	330	중1-30	상능지구 중2-360호	일반도로	번호변경 도면생략
당초	중로	2	277	15	국도 지로	135	중2-142	옥련동 소1-2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3	15	국도 지로	135	중2-142	옥련동 소1-2	일반도로	번호변경 도면생략
당초	중로	2	350	18	집도 산로	413	청학동91-14	청학동48-1 (청학구획)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4	18	집도 산로	413	청학동91-14	청학동48-1 (청학구획)	일반도로	번호변경 도면생략
당초	중로	2	353	15	집도 산로	52	중3-125	대1-13 (남촌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5	15	집도 산로	52	중3-125	대1-13 (남촌동)	일반도로	번호변경 도면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87호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청소년수련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승인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440-3374)와 남동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0.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청소년수련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 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면적(㎡)	위 치	비 고
기 정	공공·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9,600	남동구 장수동 506-2번지 일원	
변 경	공공·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9,479	남동구 장수동 506-2번지 일원	감121㎡

☐ 변경결정 및 지형도 승인고시 도면 : 별첨(생략)

